#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16

제안연월일 : 2023. 11. .

제 안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제안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3. 출연개요

(단위: 천원)

순번	출연기관	출연금	주요사항
 계	6개	4,368,120	
1	강원연구원	50,000	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
2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1,252,896	지속기능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재단 운영비 출연
3	한국지방세연구원	5,224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4	평창장학회	2,030,000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
5	강원도관광재단	30,000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
6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1,000,000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

#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

주관부서 기획실 <u>출</u> 연예상액 50,000천원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 일반현황
  - 개 원: '94. 9. 1.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 조 직: 4실, 1국, 6센터, 4팀 현원 60명(정원 69명)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4년 출연예정금액: 50,000천원
- '24년 주요사업 내용
  - 시 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
    - · 시군협력 정책 과제 1건, 현안 과제 2건 연구용역 수행
  - 네트워킹 사업 주관
    - ·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
    - ·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 정책콘서트, 세미나 등 개최 (연 20회)
  - 시군 1:1 전담 서비스 제공
    - ·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 연구제안 행정사항 등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드백
  -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 ·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 (월 4회)

- ·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정기 제공 (월 4회)
- · 주요공모사업 캘린더 제공(연초)

#### □ 출연 필요성

- 강원도 대표 연구기관으로 강원도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우리군과 연계된 핵심정책 개발이 가능
- 주요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필요

###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제13조(운영재원)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도

#### 제4조(기금)

-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 제5조(운영경비)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기초

- 출연액: 50,000천원
  -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월 4회),
  - 정책 연구과제(1건) 현안과제(2건) 용역 수행
  - 포럼·토론회 실시(필요시 1회), 수시과제·정책메모 수행(2건)
  - 전담 정책자문창구(코디네이터) 운영

## □ 기대효과

- 군 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강화
- 정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 정책·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연구로 자문기능 강화
-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강원포럼 등)

#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출연

주관부서	올림픽체육과	′24년 출연예상액	1,252,896천원
------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이사장 : 심재국)

○ 일반현황

- 법인등기 : 2021. 8. 30.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 조직구성

(이사회) 12명(이사장 1, 이사 9, 감사 2)

(사무국) 8명(사무처장 1, 총무기획팀 3, 유산사업팀 2, 문화사업팀 2)

- 주요기능

올림픽 Hostcity 평창브랜드 강화, 올림픽 유·무형 자산 유산화, 올림픽도시 및 유관기관·단체 교류활성화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4년 출연금액 : 1,252,896천원('23년 당초 출연액 428,495천원)
- '24년 주요사업 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유·무형자산 활용 유산사업, 주민참여 유산사업발굴
  - 올림픽개최도시 레거시 가치전파 및 동계스포츠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 동계올림픽 대표 시설인 스키점프대를 활용한 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Redbull 400 PyeongChang' 대회 개최를 통해 평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올림픽 유산사업 창출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유산 활용 연수 프로그램개발 및 지역 초등 학생 대상 유산교실 운영으로 올림픽도시 가치 제고
- 지역문화예술인(단체)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확대
- K-POP아카데미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성장 기회 제공

#### □ 출연 필요성

- 참여형 동계올림픽 유형·무형 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올림픽 도시로써 주민들의 자긍심 함양 확대
- 올림픽유산 활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산교실 운영으로 유산 사업 지속 발굴 추진
- 지역 내 동계스포츠 산업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 출연근거

○「평창유산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제17조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산출내역

○ 출연금 : 1,252,896천원

#### ○ 인건비 366,793천원

- 6급 팀장(11호봉) 3,276,300원×1명×12월 : 39,316
- 7급(8호봉) 2,668,400원×1명×12월 : 32,021
- 7급(7호봉) 2,561,300원×1명×12월 : 30,736
- 8급(4호봉) 2,015,700원×1명×12월 : 24,189
- 9급(3호봉) 1,821,500원×2명×12월 : 43,716
- 임기제(6급 상당) 4,400,917×1명×12월 : 52,812
- 임기제(9급 상당) 2,918,917×1명×12월 : 35,028
-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명철휴가비, 시간외수당 : 67,975천원
- 파견공무원 수당 400,000원×2명×12월 : 9,600
- 퇴직급여 31,400

#### ○ 물건비 234,617천원

-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운영수당등): 99,300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6,400
- 행사홍보비(행사유인물 및 상패제작) : 1,000
- 기타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의료비지원, 급량비, 대민활동비) : 14,880
- 여비(국내, 국외) : 40,200
- 업무추진비 12,000, 직무수행경비 19,080, 교육훈련비 10,000
- 수선유지비 5,600, 관서업무비 2,900, 성과금 23,257
- 경상이전비(포상금, 연금부담금) 30,086천원
- 자산취득비(검퓨터 등 집기류) 5,400천원

### ○ 총 9개 사업비(유산사업 5개, 문화사업 3개): 616,000천원

- '평창의 기억'디지털 아카테미 유산사업 20,000
-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130,000
- 올림픽유산 교육 프로그램 170,000
- 올림픽유산 참여형 사업 활성화 20,000
-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100,000
-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80,000
-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40,000
- 평창청소년 K-POP 아카데미 운영 56,000

# □ 출연시 기대효과

- 평창올림픽 유·무형 자산 유산화를 통한 평창브랜드 강화
- 주민공감 올림픽유산사업 추진으로 지역기반 올림픽유산 창출
- 올림픽도시 및 유관 기관·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경기 활성화

## 관계법령 발췌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

	평창유	산재단	설립	및 -	운영에	관한 :	조례」	제17	조(재	정지·	원)	
군수는	-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	구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예산	의 범의	위에서	출연	또는	보
조할	수 있다.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주관부서	세정과	′24년 출연예상액	5,224천원
------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 일반현황
  - 설립일: 2011. 2. 28.
  - 설립근거:「지방세기본법」제151조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조직구성: 5실 1사업단 5센터, 85명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4년 출연예정금액: 5,224천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
- 사용용도: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

## □ 출연 필요성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 □ 산출기초

○ 출연금 산정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단위:천원)

	· '24년 출연금		
계 현년도		과년도	24년 물년급
43,536,086 42,697,826		838,260	5,224

##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전문적인 지방세정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발전 도모

# (재)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

주관무서 인재육성과 <u>출</u> 연예상액 2,030,000전원	주관부서	인재육성과	'24년 출연예상액	2,030,000천원
--------------------------------------	------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심재국)
- 일반현황
  - 설립일자: 1990. 8. 10.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인재육성과)
  - 조직구성: 이사회 10명(이사장 1, 이사 7, 감사 2)
  - 재산현황: 11,370백만원(기본재산 9,269, 보통재산 2,101)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4년 출연금액: 2,030,000천원('23년 당초 출연액 2,530,000천원)
- '24년 주요사업 내용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 출연 필요성

- 민선8기 공약사업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한 재원 필요
- 군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액보다 기탁금액이 적어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여 지역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고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함

####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 산출기초

- 출연금 : 2,030,000천원
  - 중·고등학생 장학금: 70명 × 1학기 × 600천원 = 42,000천원
  - 대학생 장학금: 430명 × 2학기 × 2,300천원 = 1,978,000천원
  - 운영비(위원회 수당, 기타목적사업비 등): 10,000천원

## □ 출연시 기대효과

-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관내 인구증가 기여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학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출연

주관부서	관광문화과	'24년 출연예상액	30,000천원
------	-------	---------------	----------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강옥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0. 10. 13.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민법 제32조

- 소 재 지 : 춘천시 안마산로 89, 세종캐슬빌딩 3층

- 조직구성 : 1본부 3실 8팀(36명)

####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4년 출연예정금액 : 30,000천원('23년 당초 출연액 30,000천원)
- '24년 주요사업 내용
  -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 국제회의 유치·지워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

## □ 출연 필요성

-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군 통합형 관광 전문기관으로써
-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 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 쟁력 강화 도모

##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

## □ 산출기초

○ 18개 시·군 각 30,000천원 균등 부담

## □ 출연 기대효과

- 시·군간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진흥 교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조례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주관부서	농산물유통과	'24년 출연예상액	1,000,000천원

##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황성현)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1. 8. 2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운영근거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

- 운영인력 : 1실 4팀 26명

○ 주요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22년 매출액	'23년 매출액 (10월 기준)	비고 (수수료)
합계	15,200	12,307	
학교급식사업	2,937	2,483	0%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686	691	10~20%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338	350	5%
대형소비처 농산물 위탁 판매	6,852	4,213	0.3~0.5%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187	599	5%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운영	4,200	3,934	1%
고향사랑기부제	_	37	

####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O「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 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O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 단에 출연할 수 있다.

#### □ 출연 필요성

- 평창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 강화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산출기초

○ 출연액: 1,000,000천원

- 인건비 : 2,098천원×28명 × 12월 ≒ 705,000천원

- 사무관리비 : 40,000천원 × 1식 = 40,000천원

- 공공운영비 : 74,000천원 × 1식 = 74,000천원

- 행사운영비 등 기타 : 181,000천원 × 1식 = 181,000천원

#### □ 출연시 기대효과

-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평창군 농업·농촌 환경 조성
- 평창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 복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는 먹거리 종합전략 지속 추진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지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